

[서식 예] 이행명령신청서

이행명령신청

신 청 인 여 ○ ○(주민등록번호) 주 소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피신청인 남 △ △(주민등록번호) 주 소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사건본인 성별 □ □ (주민등록번호) 주 소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신 청 취 지

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○○지방법원 20○○드단 ○○ 이혼 및 위자료 사건의 20○○. ○. ○.자 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 지급 의무로서 20○○. ○. ○.부터.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월 400,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. 2.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원 인

- 1. 위 당사자 사이 ○○지방법원 20○○드단 ○○ 이혼 및 위자료 사건에 관하여 20○○. ○. ○. 귀원으로부터 "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 □□□에 대한 양육비로 20○○. ○. ○.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매달 말일에 월 40만원씩 지급한다"는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.
- 2. 신청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어 취업이 쉽지 않고 그 소득



도 얼마 되지 않아 부득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절대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, 피신청인은 형편이 어렵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금까지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
- 3.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별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이 나 피신청인은 양육비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둘만한 사람이기 에 부득이 장래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이행의무를 부담시키고자 합니다.
- 4. 장애를 안고 어린 자녀를 키우는 신청인의 처지로 아이를 키우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양육비는 너무도 중요하기에, 더 이상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을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워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의무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조정조서 사본	1부
1. 위 송달증명원	1부
1. 복지카드 사본(신청인)	1부
1. 주민등록표 초본(피신청인, 사건본인)	1부
1. 사건본인들의 기본증명서	1부
1. 신청서부본	1부

2000. 0. 0.

신 청 인 ○ ○ ○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. 자녀
	가 성년인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.
제출부수	신청서 1부 관련 법규 가사소송법 64조
요 건	가정법원은 판결, 심판,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
	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
	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
비 용	· 인지액 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
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 1. 가사소송법 제67조【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】
	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, 제63조의2제
	1항, 제63조의3제1항·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
	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,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
	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
	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	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
	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
	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
	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(監置)를 명할 수 있다.
	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의 무	2. 가사소송법 68조【특별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】
불이행자에	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
대한 제재 	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
	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
	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.
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	(期)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	2.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
	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
	니한 경우
	3.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
	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	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